

보도시점

2024. 12. 5.(목) 12:00

< 12. 5.(목) 석간 >

배포

2024. 12. 4.(수) 09:00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 고급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허용, 정부양곡 도정시장 경쟁촉진, 정부 조달시장 진입제한 완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월5일)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요약(22건) >

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대표 과제	고급택시, 정부양곡, 의료기기 등 4건	중고차, 담배자판기, 위생용품 등 5건	우수조달물품, 에어컨 세척서비스 등 7건	스마트폰, 수소충전소, 출판사 등 6건

< 주요 개선사례 >

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사고이력 정의는 뒷장 유의사항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후드(보닛), 펜더(바퀴 윗부분),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 건이라도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없음 []있음
(뒷장) 유의사항	
4.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①차량수리의 정도(예: 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②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소비자가 별도로 ‘자동차 365’에 접속하여 주행거리를 확인·비교해야 하는 불편 해소

이를 통하여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고급택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하여,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특히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 고급택시 주요 차종(그랜저,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1,598cc, 54kw 전기모터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축간거리:2.895m)하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정부양곡)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농림부)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양곡의 도정공장을 지정하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된다.

* 공공용(기초생활수급자, 무료급식단체 등), 국가기관용(군부대, 교정기관), 가공용(약 1,000여개 쌀가공업체), 주정용(8개 주정회사), 사료용(농협 및 사료협회 소속 제조업체 등)

그런데 정부양곡 도정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일부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 양곡 이물질 혼입 등과 같은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한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되어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식약처)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허가(인증·신고) 받은 성능·구조·정격 등의 변환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된다. 다만, 인체 위해도가 낮아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라도 외관 변경의 경우로만 국한되어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 *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 1등급(진료용 조명등, 수동식 휠체어 등), 2등급(의료용 스쿠터, 진단용 X선 촬영장치 등)
 - 3등급(고주파자극기,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등), 4등급(보조심장장치, 혈관용스텐트 등)

** 외장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거나, 성능과 직접 관련 없는 거치대 손잡이 바퀴 등 외관 모양구조 변경

이에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소기업 지원) ①우수조달물품 (조달청), ②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였다.

- * (우수 조달물품)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대기업 등의 컨설팅·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되어 효율적인 제조가 어려움에 따라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위축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었다.

-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에 수행기관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만 제출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⑥ (스마트폰 인증)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된다. (국가기술표준원)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수입업자는 당초 스마트폰 공급업자가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외에도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전기용품은 그 위해도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확인 → 안전인증』 필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조정(17cm→20cm)* 하였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 삼성애플 스마트폰 중 대형 모델 19.3cm, 태블릿 중 소형 모델 20.1cm)

⑦ (공사기준 조정)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된다. (국토부)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 이상의 토목공사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과 품질시험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공사기준이 그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 통해 공사기준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또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현행 토목공사 금액 기준(5억)은 '94년에 규정

⑧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가 도입되었다. (문체부)

출판사 신고 이후 변경사항(출판사 이름, 소재지, 대표장 성명 등)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변경신고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정부24' 연계 완료)

붙임 :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재식 (044-200-4351)
		담당자	사무관	김민아 (044-200-4353)

1.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고급형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진입 허용 ■ (현행)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이상 차량만 가능 → 최근 출시중인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그랜저, 스타렉스 등) 고급택시 운행 불가 ■ (개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 축간거리(2.895m) 이상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24.8월 개정완료)	국토부
2	▣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제한 완화 ■ (현행) 정부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120개)에서만 가능 ■ (개선)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도정시장 경쟁촉진	정부관리 양곡처리 도급계약체결요령 (~'24년)	농식품부
3	▣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 (현행) 사료기준은 양축용 동물 중심의 원료 기준*으로 정립되어 40여 년간 동일 체계 유지 * 현재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 구분 ■ (개선) 원료 기준의 사료체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료 분류체계 마련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25년 상반기)	농식품부
4	▣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의료기기 수리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 ■ (개선) 의료기기 수리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 및 관리방안 등 마련	의료기기법 ('25년~)	식약처

2.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2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신뢰성 제고 ■ (현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주행거리 조작 문제 등 발생 ■ (개선) ①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표시, ②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365' 상 주행거리도 함께 표시(계기판 촬영사진 추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5년)	국토부
3	▣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 (현행) 모바일 신용카드 등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여부 불분명 ■ (개선) 모바일 성인인증수단도 허용되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불확실성 해소, 관련 사업제약 완화	유권해석 완료	복지부
4	▣ 전기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개선 ■ (현행) 전기차 의무 보유기간 내 중고차 판매시, 지자체 승인신청, 결과 확인 방법 등 불편 ■ (개선) 지자체 누리집 내 별도 페이지 개설로 승인절차 안내·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 처리, 요구서류 간소화	지자체(대구) 누리집 개설 ('25년 상반기)	지자체
5	▣ 위생용품 리필판매 규제 완화 ■ (현행)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위생용품을 리필해 가는 판매점(제로웨이스트샵)의 경우에도 기존 제조업 규제 적용 ■ (개선) 리필매장을 위한 별도의 영업을 신설하는 등 규제개선	위생용품 관리법 ('25년)	식약처

3.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입찰에서 사업 수행실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만 평가하여 기존 대형업체에 유리 ■ (개선) 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25년 상반기)	산업부
2	■ 우수 조달물품 협업기업 복수 참여 허용 ■ (현행)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제품 제도시, 협업기업을 1개로 한정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보 곤란 ■ (개선) 우수 조달물품 협업기업 수를 복수로 확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24.5월 개정완료)	조달청
3-4	■ 철도차량 제작감독 용역입찰 평가기준 개선 ■ (현행) 고속철도차량 제작감독 용역입찰에서, 수행실적을 고속철도차량 용역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존 실적이 있는 업체(사실상 1개)가 유리, 신규기업 진입제한 ■ (개선) 수행실적 평가 점수의 간격을 축소하여, 실적이 부족한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코레일, SR)	철도차량 제작감독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4년)	코레일, SR
5	■ 에어컨 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 계약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나라장터 에어컨 세척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에서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관리사'자격을 요구하여 다수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 (개선) 에어컨 세척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민간자격증 보유자 또는 제조사의 에어컨 세척 교육 이수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5년 상반기)	조달청
6-7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 (현행) 생산시설 인력 등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과도하거나, 신기술(공법)로 생산된 제품은 기존 현장실사 등으로 확인이 곤란 ■ (개선) ①일부 제품(지주식천막, 폴리에스테르직물)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 ②공인기관의 신기술·신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제조공정표' 등으로 갈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25년)	중기부

4.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 (현행) 화면 대각선 길이 17cm이상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스마트폰 수입업자는 당초 스마트폰 공급 업자가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외에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 (개선) 태블릿 PC의 화면크기 기준을 조정(17cm→20cm) 하고, 태블릿 PC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재조정 검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5년)	국가기술 표준원 (산업부)
2	■ 수소충전소에서 충전가능한 용기 제한 완화 ■ (현행)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서는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며 자동차에 탑재되지 않은 수소저장시스템 단위 용기에는 충전 불가 ■ (개선)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 연구개발 전용 충전소에 대하여 충전대상 제한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6년) * 실증사업 종료 후 개선안 마련	산업부
3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제출서류 완화 ■ (현행)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 등에 관한 서류도 제출 →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대기업 등 기업 참여가 주저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 ■ (개선)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만 제출	혁신바우처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24년)	중기부
4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기준 완화 ■ (현행) 일정 공사기준 이상(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인력배치, 실험실 설치가 의무화되나, 공사기준이 그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 부담 가중 ■ (개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 공사금액 현실화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5년 하반기)	국토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5	■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 (현행) 출판사의 변경신고 시 방문 접수만 가능 ■ (개선)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정부24 연계)	정부24 적용 완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5년 상반기)	문체부
6	■ 가설건축물(천막) 설치면적 제한 완화 ■ (현행)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서 가설건축물 중 천막 설치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규제 편차 발생 ■ (개선)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등에 한해 조례상의 천막 설치 면적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거창군 등 지자체 조례 (‘25년 상반기)	지자체